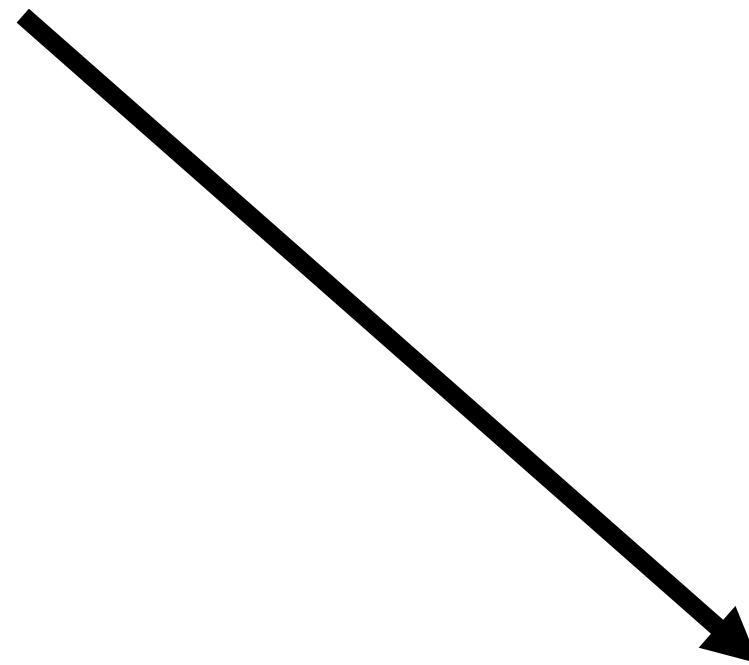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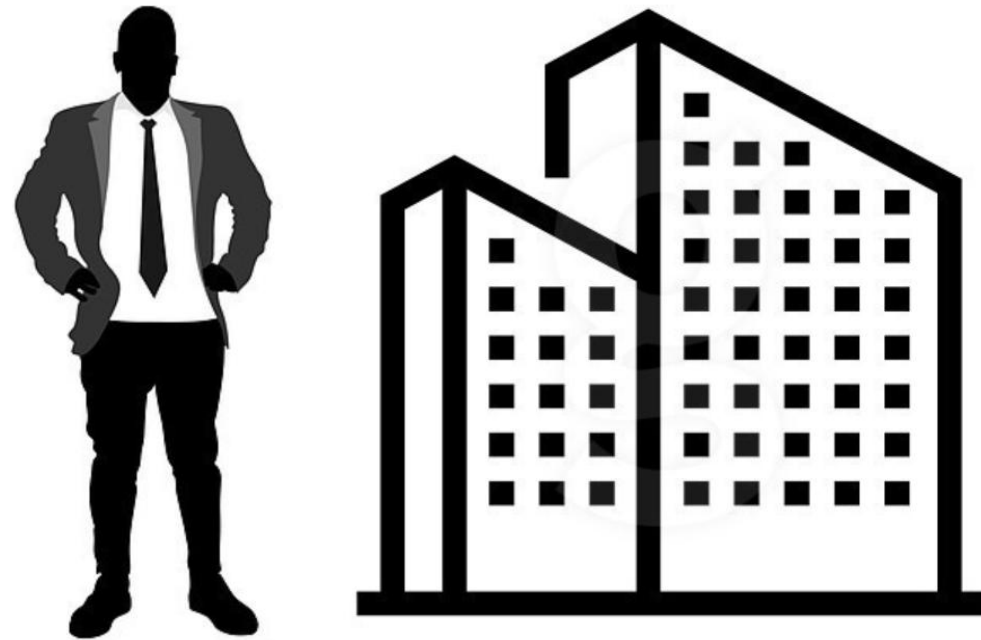


특정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

가업승계의 개념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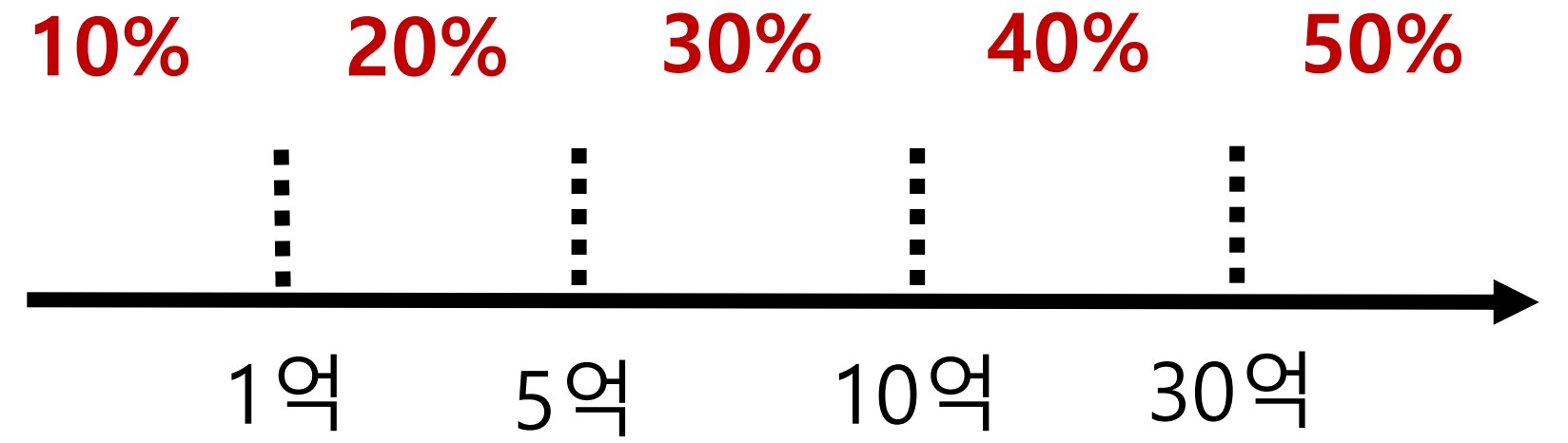
(父母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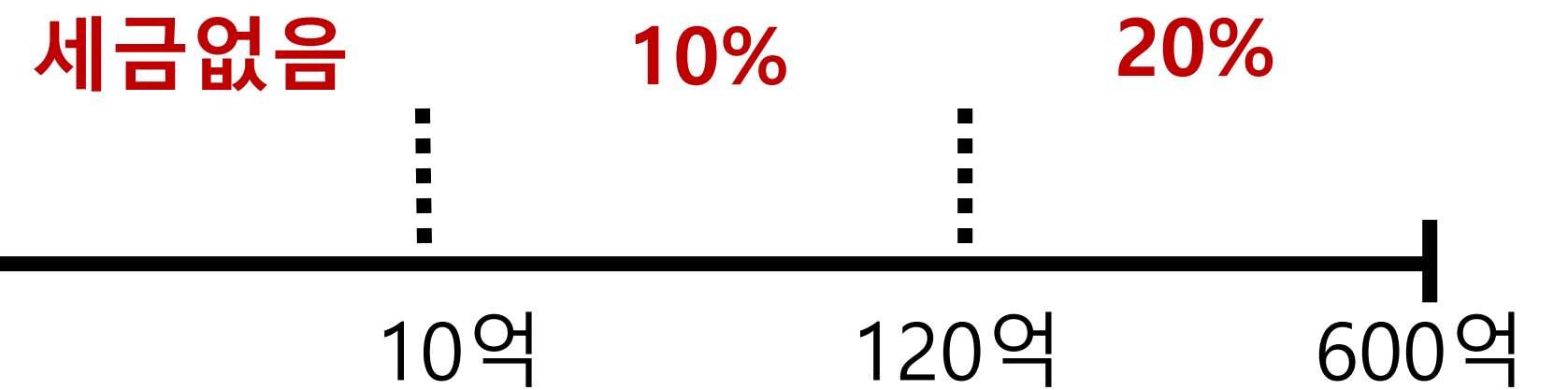
(子女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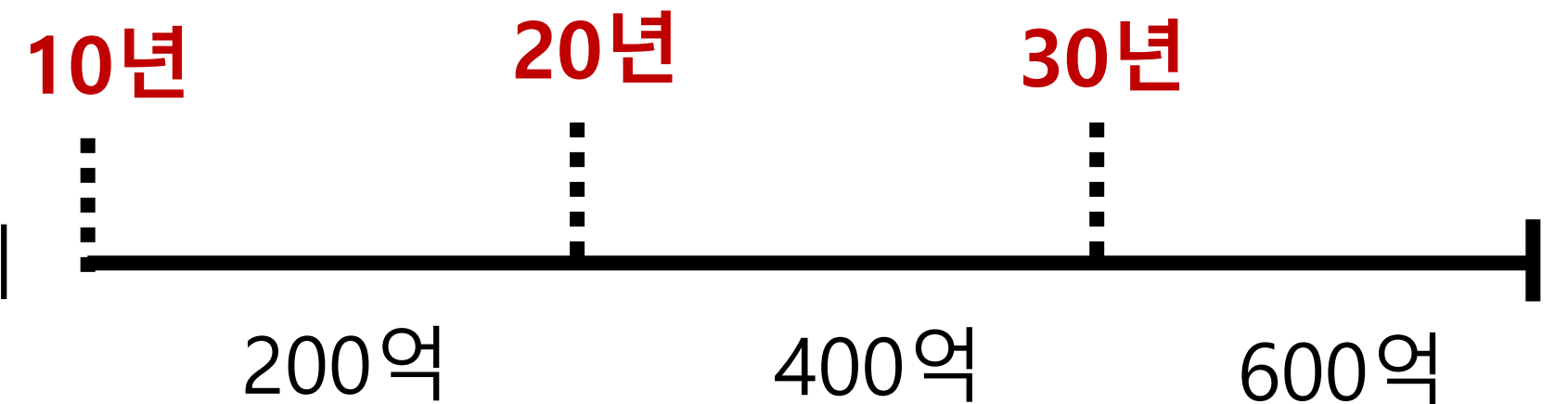
일반
상속/증여



증여세
과세특례



가업
상속공제
(비과세)



제도활용이 곤란한 법인과 특정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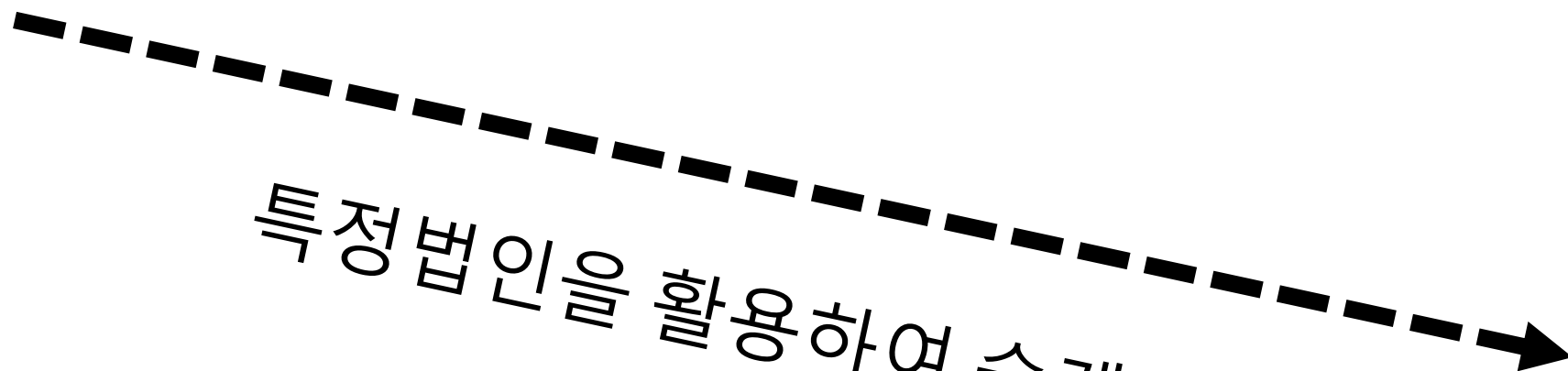
(父母)



- ① 높은 세금
- ② 특례조건 미충족
- ③ 사후관리 곤란



(子女)



특정법인을 활용하여 승계진행

특정법인이란?

상속세 및 증여세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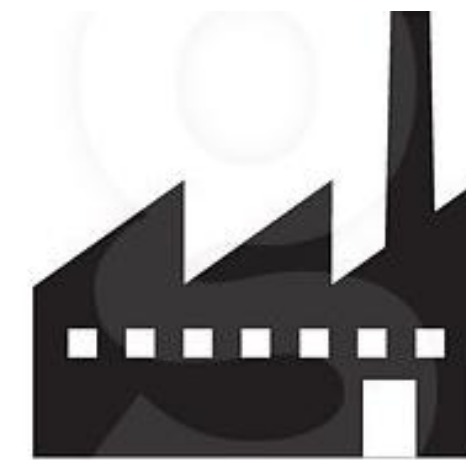
제45조5

-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
(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"특정법인"이라 한다)



(A법인)

A법인의 지배주주 및 가족들이
B법인의 지분을 30%이상 보유하면
B법인을 A법인의 특정법인이라 한다.



(B법인)

※ 동의어: 가족법인, 자녀법인 등

특정법인의 장점(초과배당 및 법인세)

법인세 포괄주의

※ 포괄주의

원천에 관계없이 이익이 발생하여
순자산이 증가한다면 과세하는 것(=순자산증가설)
법인세

※ 열거주의

법에서 정한 이익에만 과세하는 것(=소득원천설)
개인소득세

법인이 얻은 이익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법인세를 과세하고
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음(예외 有)

특정법인의 장점(배당금 익금불산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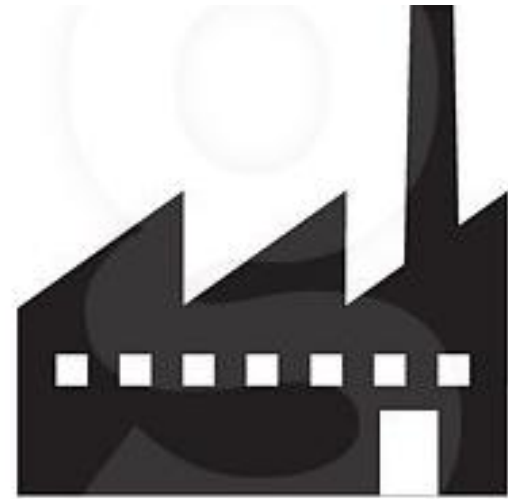
법인세법

제18조의2(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) ① 내국법인(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피출자법인"이라 한다)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(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"수입배당금액"이라 한다)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.
<개정 2019. 12. 31., 2022. 12. 31.>

1.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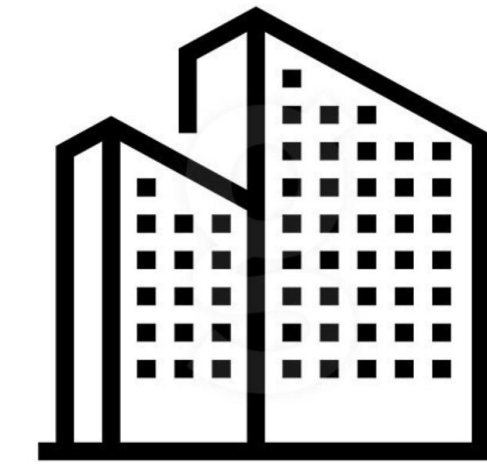
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	익금불산입률
<u>50퍼센트 이상</u>	<u>100퍼센트</u>
<u>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</u>	<u>80퍼센트</u>
<u>20퍼센트 미만</u>	<u>30퍼센트</u>

예시



(A법인)

3억 초과배당



(B법인)



<A법인 주주>		
모	부	B법인
20%	20%	10%

출자비율과 익금불산입률에 따른
B법인의 익금

$$50\% \text{이상 } 3\text{억} \times 100\% (3\text{억}) = 0$$

$$20\% \text{이상 } 3\text{억} \times 80\% (2.4\text{억}) = 6\text{천}$$

$$20\% \text{미만 } 3\text{억} \times 30\% (9\text{천}) = 2.1\text{억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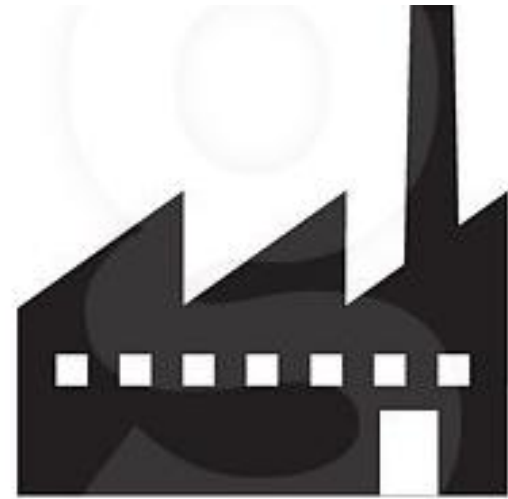
특정법인의 장점(증여의제)

상속세 및 증여세법

제45조의5(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)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(이하 이 조에서 "지배주주등"이라 한다)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(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"특정법인"이라 한다)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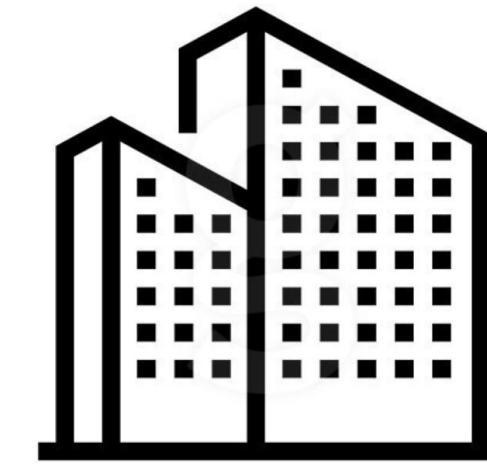
1.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
2.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·제공받는 것
3.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·제공하는 것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예시



(A법인)

3억 초과배당



(B법인)

B법인 주주 증여의제 금액

A $3\text{억} \times 40\% = 1.2\text{억}$

B $3\text{억} \times 30\% = 9\text{천}$

C $3\text{억} \times 30\% = 9\text{천}$



<B법인 주주>

A 40% B 30% C 30%

특정법인의 장점(증여의제 한도)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제34조의5(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) ① 삭제 <2020. 2. 11.>

② 삭제 <2020. 2. 11.>

③ 삭제 <2020. 2. 11.>

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"특정법인의 이익"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가.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: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·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

나. 가목 외의 경우: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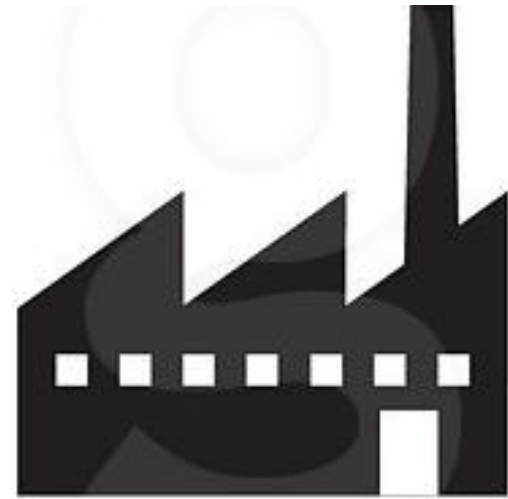
2.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
가. 특정법인의 「법인세법」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(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)에서 법인세액의 공제·감면액을 뺀 금액

나.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「법인세법」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(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)

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.<개정 2020. 2. 11.>

예시



(A법인)

3억 초과배당



(B법인)

B법인 증여세 과세대상 주주

A 3억 X 40% = 1.2억

B 3억 X 30% = 9천

C 3억 X 30% = 9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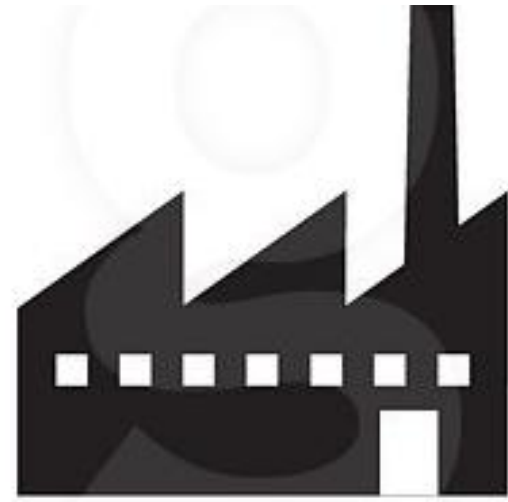
<B법인 주주>

A
40%

B
30%

C
30%

특정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핵심



(A법인)

A법인의 자산과 매출을
B법인으로 이전



(B법인)

- ① A법인의 잉여금을 B법인으로 이전
- ② 이전된 잉여금으로 부동산의 취득
- ③ A법인의 매출을 B법인으로 이전

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법인은
특정법인을 활용하여 가업승계 실행